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검찰 PROSECUTION SERVICE	의정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 차장검사 차순길 전화 031-876-0002	보 도 자 료 2023. 3. 31.(금)

제 목	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 관련 중처법위반 등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및 수수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
❑ 의정부지검 형사4부(부장검사 홍용화)는 2022. 1. 29. 양주시 소재 A사 운영 채석장에서 골재채취 작업 중 대규모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이 매몰되어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한 결과,

- 오늘(3. 31.) A사의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하여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·총괄한 그룹 회장 B○○ 및 A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, 대표이사 C○○ 등 임직원 6명 및 A사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등으로 각 불구속 구공판하고, 현장 실무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각 약식기소하였음

❑ 검찰의 증거수집과 법리 검토 결과, B○○이 △ 채석산업에 30년간 종사한 전문가인 점, △ 사고현장의 위험성을 사전 인식한 점, △ 안전보건업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실질적·최종적 결정권을 행사한 점, △ 그룹 핵심사업인 골재채취 관련 주요사항을 결정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하였음

- 그럼에도 B○○은 법률이 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(① 붕괴 관련 유해·위험요인의 확인·개선에 관한 업무절차 마련, ②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)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

❑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음

1 중대재해 개요 및 주요 피고인 별 공소사실 요지

□ 중대재해 개요

○ '22. 1. 29. 양주시 소재 A사 운영의 양주사업소 채석장에서 토사 약 30만㎥(25톤 트럭 18,000대 분량)가 무너져 내려 그 밑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되어 그 자리에서 다발성 외상 및 질식 등으로 사망함

양주채석장 사고발생 위험성과 그 징후

○ 2019. 5.경 피고인 B○○ 등은 양주사업소 가채량 부족을 해결하고자 석분토 316만㎥ 상당이 쌓여있는 야적장(부대시설)을 채취장으로 변경하고, 굴착기로 석분토 사면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계단식으로 석분토를 걷어내며 골재를 채취하기로 계획하고, 2020. 5.경 채석변경 신고

○ 2021. 7.경 피고인 B○○ 등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골재를 채취할 경우 연간 매출액에 상당하는 비용 지출이 예상되자, 야적장 상부가 아닌 하부의 석분토부터 걷어내고 골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, 하부부터 채석 시작

○ 하부를 채석할 경우 굴착면 기울기를 45°(높이와 바닥 길이 비율 1:1～1:1.5) 이하로 유지해야 하나, 2022. 1. 27.경 하부채석장 굴착면 기울기가 53°(같은 비율 1:0.73)에 이르러 붕괴 위험 증가

○ 2022. 1. 19.경 석분토 야적장 최상단 사면에서 쌓아둔 석분토가 무너져 내려 덤프트럭이 전도되는 사고 발생 → 2022. 1. 25.경(사고 4일 전) 하부 채석장 상단에서 석분토 약 5,585㎥ 상당이 흘러내리는 붕괴 사고 발생

□ 주요 피고인 별 공소사실 요지

1. B○○(그룹 회장), A사 : 중대재해처벌법위반(산업재해치사)

○ '22. 1. 29.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△ 유해·위험 요인 등 확인·개선 절차 마련, △ 중대산업재해를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함

2. C○○(대표이사) 등 10명, A사 : 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

○ 같은 날 △ 굴착면 기울기 준수 △ 작업계획서 작성 등 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」상 조치를 미이행한 과실로 근로자 3명이 무너져 내린 토사 약 30만㎥에 매몰되어 사망에 이르게 함

2 수사 결과

1 경영책임자인 그룹 회장 B○○을 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 기소

○ 검찰은 면밀한 증거수집과 법리검토 결과, A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·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중대재해처벌법(이하 '중처법')상 경영책임자는 그룹 회장인 B○○임을 확인하였음

○ 중처법상 '경영책임자'는 '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'을 의미하고,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·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직함[대표이사, CSO(최고안전책임자), 회장]에 관계없이 경영책임자에 해당함

※ 대표이사 또는 회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, 사안에 따라 사업체의 구체적 경영방식,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보고·승인·실행 체계 등 실체관계를 살펴 경영책임자를 판단해야 함

-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직접 결정하는 등 실질적 권한을 행사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려는 중처법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임

○ 검찰은 위 중대재해사고와 관련하여, 피고인 B○○을 중처법이 규정하는 A사의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하였음

- 피고인 B○○은 ①30년간 채석 산업에 종사해온 전문가이자 사고현장의 석분토 야적장 설치와 그 채석작업 방식을 최종 결정하였음

- ②특히 사고현장에서 채석작업이 계속될 경우 사면 기울기가 가팔라지고 채석을 위한 반복적 발파 진동으로 사면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었음

- ③그럼에도 생산 목표 달성을 위해 채석작업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A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에게 안전보건 업무 등에 관한 구체적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·최종적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음

※ 중처법상 '경영책임자'에 관한 법리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, 제반 증거에 따라 A사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하여 단순히 보고받는 정도를 넘어 실질적·최종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함

- ④ A사가 속한 그룹은 채석부터 레미콘 생산·판매까지 계열화되어 있는 기업집단이고, A사의 사업은 그룹의 근간이 되는 핵심사업으로, 피고인 B○○이 안전보건 업무를 포함한 경영권을 직접 행사할 필요성이 매우 컸고, 실제로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하여 주요사항을 결정하였음

※ A사는 중처법 시행을 앞두고 피고인 B○○의 지시로 CSO를 선임하였음에도 CSO에게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실질적·최종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음

○ 결국, 그룹 회장인 피고인 B○○이 A사의 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실질적·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, 그럼에도 중처법 시행 이후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미이행한 사실과 사망사고와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었기에, 대표이사나 CSO가 아닌 피고인 B○○을 중처법위반죄로 기소한 것임

② 대표이사 C○○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

○ 대표이사 C○○은 A사에서 대내외적 대표성과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고, B○○의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고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에 그쳐 경영책임자로 인정하기는 어려움

○ 다만, △ 사고장소의 위험성과 사고발생의 개연성을 직접 인식한 사실, △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불이행한 사실, △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하였음

3 향후 계획

○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이루어지도록 엄정하게 공소를 유지하겠음 ▨